

#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1
----------	-----

제출일자 : 2006. 5.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와 2006년도 시·군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 나.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안 제22조제1항)
- 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안 제25조)
- 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5조의2제2항제3호)
- 마. 공매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안 제36조제3항)
-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을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안 제38조제2항제4호)
- 사.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 (안 제55조)
- 아. 재산세 납기 조정에 따라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 납기 변경 (안 제90조제2항제3호)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 - 261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 나. 관련공문

- 경남도 세정과-1393(2006.02.08) 및 세정과-2355(2006.03.07) 군세조례 표준안

##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정 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55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쉐련 50그램당 3,270원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고성군반설치조례”를 “「고성군반설치조례」”로, “고성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을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26조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며, 제28조 본문 중 “고성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를 “「고성군세감면조례」”로 하고, 제100조 본문 중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고성군세감면조례」”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의2(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                      -----                      -----.</p>
<p>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 신고 납부 할 수 있다.</p>	<p>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p> <p>① (생략)</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p> <p>&lt;단서 신설&gt;</p> <p>4~5 (생략)</p> <p>③ (생략)</p> <p>제36조(납세의무자)① ~ ② (생략)</p> <p>&lt;신설&gt;</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p>1~3 (생략)</p> <p>&lt;신설&gt;</p>	<p>개정안</p> <p>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2 (현행과 같음)</p> <p>3.-----</p> <p>-----</p> <p>-----</p> <p>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4~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6조(납세의무자)①~②(현행과 같음)</p> <p>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p>

